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[2026. 9.28.(월)]

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창 원 시 의 회
(건설해양농림위원회)

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26. 9. 28.
건설해양농림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8. 24.
서명일・강창석・곽은정・김원일・남재욱
박영주・박현재・변보미・이우완・차중현
황점복 의원(11명)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8. 27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
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(2026.9.28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: 서명일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주차장 바닥의 주차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함으로써,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거울을 통해 차량의 위치와 주차선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수직주차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)

○ 수직주차선 표시 기준을 신설함(안 별표 5의2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○ 현행 조례

○ 입법예고(2026. 8. 24.~ 8. 31.) 결과: 의견 없음

3.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정은정)

□ 개정목적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(수직주차선)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자가 후진 주차 시 별도의 주차 보조장치 없이 차량 내 거울만으로도 주차구획과 차량 위치를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접촉사고 예방 등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 내용

○ 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을 통해 주차장 설치·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한 주차를 위해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

○ 별표 5의2를 통해 수직주차선 표시 조건, 규격, 연장 높이 등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규정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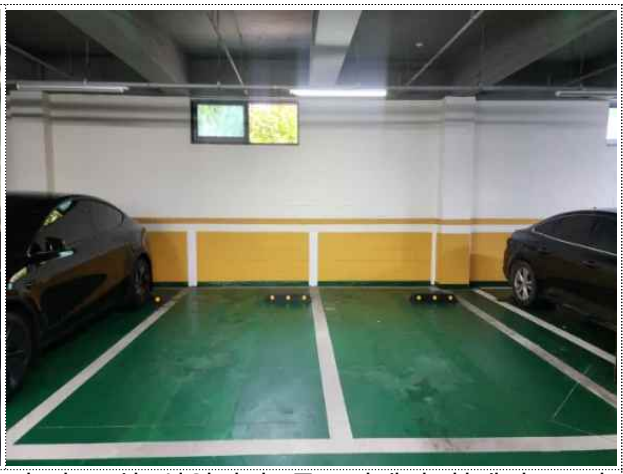
□ 종합의견

○ **본 개정 조례안**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주차 불편과 안전 위해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, 저비용·고효율의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시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됨

○ 충남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말 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수직 주차선을 시범 도입한 후,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주차 안전도 99.6%, 주차 편의성 97.9%[1]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480여 면으로 확대 설치하였음. 이후 조례 개정(2026. 3.)과 특허 출원을 마쳤으며, 서울시 동작구 등 타 지자체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시범 설치를 확대하는 등 현장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우수 행정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임

< 수직주차선 도입 및 운영 관련 언론보도 사례>

. 창밖으로 고개 안 내밀어도 됩니다...벽까지 그은 '수직 주차선' 혁신 (2026.08.20. 세계일보)
. 주차선이 벽까지 쭉! 동작구, 공영주차장 '수직주차선' 시범 설치 (2026.08.18. 경향신문)
. "6,000원으로 문콕 해결"...선 하나 그었더니 '주차 안전' 99% 만족 (2026.06.09. 머니투데이)
. 공주시, 전국 지자체 최초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확립 및 공영주차장 도입(2026.05.26. 공주시청)

사진출처: 경향신문 기사('주차선이 벽까지 쭉' 후진 주차 쉬워진다…공주시에서 화제된 '수직 주차선' 동작구도 도입)

○ 본 조례안은 주차장 설치·관리자의 수직주차선 도입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, 모든 주차장에 일률적인 설치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주차장 구조와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

1) 공주시, 전국 지자체 최초 수직주차선 설치기준 확립 및 공영주차장 도입 (2026.5.26. 공주시청)

○ 상위법령인 「주차장법」의 범주 내에서 창원시 내 공영주차장 관리 효율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법령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다만,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 주차장 중 주차장 구조, 이용률 및 벽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고 시범 운영한 후, 이용자 만족도와 편의성, 차량 접촉 사고 발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○ 또한 설치 이후 도색의 훼손 및 시인성 저하 등에 대비한 유지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지속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임

○ 종합적으로 **본 개정조례안**은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**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**되며, 향후 주차장 유형별 적용 가능성과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, 시범 운영을 통한 효과성 검증 및 지속적 유지 관리 방안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· 답변요지: 기재생략

5. 토론(대체토론)요지(주요문제점): 없음

6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7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사항, 촉구사항 등): 없음